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사무의 민간위탁 재위탁 동의안

의안번호	435
------	-----

제출연월일: 2026. 5. 28.

제 출 자: 송파구청장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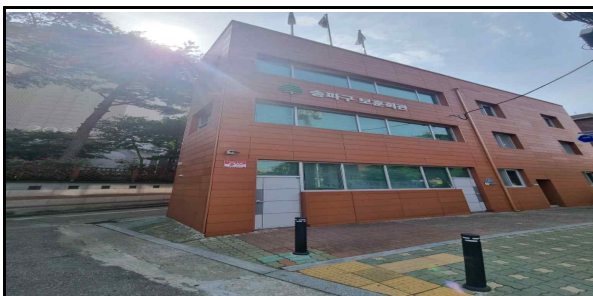
1. 제안이유

국가를 위해 희생하거나 공헌한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에 대한 예우와 복지 증진 및 보훈단체 활동의 활성화를 위해 운영 중인 송파구 보훈회관의 위탁기간이 2026. 9. 30.에 만료됨에 따라, 보훈회관의 효율적인 운영과 보훈 복지 서비스 지원을 위해 관련 사무를 재위탁하고자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제4항에 따라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에 동의를 받고자 함

2. 주요내용

가. 시설개요

- 시설명: 송파구 보훈회관
- 소재지: 송파구 성내천로 306(마천동)
- 규모: 대지 422㎡, 연면적 755.65㎡(지하1층, 지상3층)
- 운영인력: 3명[보훈회관 운영협의회 회장, 사무, 시설관리]
- 시설 및 위치도



송파구 보훈회관 전경



위치도

나. 위탁내용

- 위탁기간: 2026. 10. 1. ~ 2029. 9. 30.(3년)
- 위탁사무: 송파구 보훈회관 관리 및 운영
- 수탁자 선정방법: 수의계약
- 민간위탁 필요성
 - 보훈단체의 육성·발전과 보훈대상자의 자활능력 배양 및 복지 증진을 위해 조성된 보훈회관은 관내 9개 보훈단체가 입주해 있는 시설로서, 시설의 특수성과 운영의 자율성 보장이 중요함
 - 입주단체 간 협의체인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에 운영 사무를 민간위탁 하여 시설 운영의 전문성과 효율성을 높이고, 이용자 중심의 자율적 운영과 만족도 향상을 도모하고자 함
- 운영예산: 연간 96,750천원(구비, '26년 기준)

다. 민간위탁 운영평가위원회 심의결과: 원안가결('26. 5.19.)

라. 향후계획

- 수탁자 선정 구의회 서면보고 '26. 6.
- 위·수탁 협약체결 '26. 7.

3. 참고사항

가. 관련법규

-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대상사무의 기준 등)
-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8조(운영 및 관리)

나. 소요예산

- 운영예산은 전액 구비(복지돌봄과, 국가유공자 복지증진, 보훈단체지원, 보훈회관 운영 지원, 민간이전, 민간위탁금)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

제4조(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

- ① 법령 및 조례·규칙에 따른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검사·검정·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의무와 직접 관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할 수 있다.
1. 단순 사실행위인 행정사무
 2. 공익성보다 능률성이 현저히 요청되는 사무
 3. 특수한 전문지식 및 기술을 요하는 사무
 4. 그 밖에 구민생활과 직결된 단순행정사무
- ②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에 대하여 민간위탁의 필요성 및 타당성을 정기적·종합적으로 판단하여 필요한 경우에는 민간위탁을 한다.
- ③ 구청장은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무를 민간위탁하였을 때에는 사무의 처리에 필요한 지침을 시달하고 위탁사무의 수행에 소요되는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수탁기관에 지원할 수 있다.
- ④ 구청장은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 사무를 위탁 또는 재위탁할 경우에는 제4조의2에 따른 심의를 거쳐 서울특별시 송파구의회(이하 "구의회"라 한다)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 ⑤ 제4조의2제2항의 심사대상이 아닌 사무를 재위탁할 경우에는 소관 업무 담당부서장이 소관 상임위원회에 서면보고하는 것으로 구의회의 동의를 받은 것으로 본다.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7조(운영협의회)

- ① 보훈회관에 입주한 보훈단체의 구 지회장들은 보훈 회관의 효율적 운영을 위하여 서울특별시 송파구 보훈회관 운영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 ② 협의회는 보훈회관의 합리적 운영을 위하여 대표자를 선임하고, 협의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을 마련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제8조(운영 및 관리)

- ① 보훈회관은 구청장이 운영·관리한다. 다만, 구청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보훈회관의 운영목적에 적합한 법인 또는 단체(협의회를 포함한다)에 위탁하여 운영할 수 있다.
- ② 보훈회관을 수탁 받아 운영하고자 하는 법인 또는 단체의 대표자는 별 지 제1호 서식에 따른 신청서를 구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③ 이 조례에 규정하지 않은 민간위탁에 관한 사항은 「서울특별시 송파구 행정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를 준용한다.

제11조(지원) 구청장은 예산의 범위에서 보훈회관의 운영 및 유지관리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5조(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계약담당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법 제9조제1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8. 그 밖에 계약의 목적·성질 등에 비추어 경쟁에 따라 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비효율적이라고 판단되는 경우로서 다음 각 목의 경우

사.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업을 위탁받거나 대행할 수 있는 자와 해당 사업에 대한 계약을 하는 경우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시행령

제19조의5(수의계약에 의할 수 있는 경우)

① 법 제27조제2항 단서에 따라 수의계약으로 행정재산을 관리위탁할 수 있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다.

1. 다른 법령에 따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무 또는 사업을 위탁 또는 대행할 수 있는 자에게 관리위탁을 하는 경우

국가보훈기본법

제19조(예우 및 지원)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보훈대상자의 생활안정과 복지향상 등 예우 및 지원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3조(정부의 시책)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국가유공자의 애국정신을 기리고 이를 계승·발전시키며, 제2조의 기본이념을 구현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한다.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의2(국유·공유 재산의 우선 매각 등)

①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각 국가유공자등단체의 운영 및 복지사업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유재산법」 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에도 불구하고 국유재산 또는 공유재산을 우선 매각할 수 있고, 유상 또는 무상으로 대부하거나 사용·수익하게 할 수 있다.